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. 7. 6 선고 2022가단336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6. 22.

판 결 선 고 2022. 7. 6.

주 문

1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19. 9. 18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0. 4. 1. 접수 제49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이아영

별지